

교직원 보수 규정

제정 1997. 4. 15.

제23차 개정 2025. 4.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직원의 보수는 관련 법령,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규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라 함은 정관, 교원인사규정 및 교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상지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2.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정관 제43조에 의하여 임용된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정관 제84조에 의하여 임용된 사무직(별정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술직 직원을 말한다.
4. “보수”라 함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6.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7.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8.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22.]

제4조(보수의 책정) 총장은 매년 말에 다음 해에 예측되는 물가수준과 공무원의 보수 인상 및 타 대학의 보수 수준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해의 보수를 책정한 후 이를 예산서에 반영하여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의2(보수삭감 등) ①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교직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교직원의 보수를 삭감·동결·반납할 수 있다. 단, 반납의 경우에는 교직원 개인별로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동의는 투·개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경우 공인된 온라인투표 방법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2.]

제2장 봉급

제5조(봉급) ①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총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비고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직원의 봉급월액은 사무직·기술직 직원의 경우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특별초빙 되는 한방병원장의 봉급은 별도의 연봉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해당되는 별도 연봉계약에 의한 경우 제6조부터 제29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12.22.]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은 임용권자가 이를 시행하고, 승급은 총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교직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교직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를 준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한다.

③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호봉의 재획정) ① 교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2. 제12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합산을 신청한 경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

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확정한다.

- ③ 초임호봉확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확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확정의 방법에 의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교직원의 경력에 승급 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 ⑤ 호봉재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승진시의 호봉확정) ① 교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명 또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확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직명 또는 계급에서의 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6 또는 별표 28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직명 또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확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교직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직명 또는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 전의 직명 또는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직명 또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확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직명 또는 계급에서의 호봉확정으로 갈음한다.
- ④ 승진되기 전 직명 또는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직명 또는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0조(강임시의 호봉확정) ① 직원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확정한다.

- ②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확정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이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확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확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확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직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강임일에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확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확정으로 갈음한다.
- ④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1조(정기승급) ① 교직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 ② 교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1.8.16., 2008.2.18.)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직원은 승급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확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22.)

제12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21.12.22.)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3. 교직원인사규정 및 교직원인사규정 운영내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12.22.)

③ 교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직명 또는 계급에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④ 제1항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1조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3. 국제기구·외국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4.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 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의 불량 또는 근무태도의 불성실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 (처분으로 인하여 승

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제13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확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교직원의 호봉확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행한다.

제4장 수당

제14조(수당의 지급)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봉급외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말수당) (조 개정 2001.6.21.) 삭제 (2006.3.9.)

제16조(정근수당) ① 교직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22.)

- 1월 1일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1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교직원(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해당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교직원(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근무연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직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1.12.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 직위해제 처분,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교직원 또는 외국유학이나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교직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2.)

1. 정직처분을 받은 교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전액 감액한다.
2. 감봉처분을 받은 교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전액 감액한다.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직원에게는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4.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교직원 또

는 외국유학이나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교직원 중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17조(장기근속수당) ① 교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4.22.)

②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3의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근무연수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가족수당) ①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월 보수지급일에 공무원에 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4.)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해당 교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21.12.22.)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라 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00.1.28.)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개정 2000.1.28.)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12.22.)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교직원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

급한다.

⑦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⑧ 총장은 교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21.12.22.)

제19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삭제 (2021.12.22.)

② 본 대학교 외에 타 대학(교) (국외소재 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5월과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항 신설 2004.10.12.)

③ 삭제 (2021.12.22.)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교육비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항 변경 2004.10.12.) (개정 2021.12.22.)

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직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항 변경 2004.10.12.) (개정 2021.12.22.)

⑥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항 변경 2004.10.12.) (개정 2021.12.22.)

⑦ 제18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1., 2021.12.22.) (항 변경 2004.10.12.)

제20조(연구수당 및 근무수당)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명 또는 계급에 따라 교원에게는 연구수당을, 직원에게는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6.21.)

② 제1항의 연구수당 및 근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과 교원인사규정 제25조에 의한 연구수당 삭감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항 개정 2001.6.21.) (개정 2007.2.26., 2021.12.22.)

③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3의 구분에 따라

위 연구수당 및 근무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22.)

[제목개정 2021.12.22.]

제20조2(임상연구수당) ① 한의과대학 소속 임상교원(전임교원)에게 임상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임상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6.8.11.)

제21조(교원면허증 수당) ① 전임교원 중 면허증(한의사, 의사) 소지자에게 면허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19., 2015.3.26.)

②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개정 2000.9.21., 2015.3.26.)

제21조의2(포상수당 등) ① 대학발전 공로자, 외부 보조금·기부금 유치 기여자, 신임 교직원, 하위 직급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포상수당 :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2. 성과수당 : 외부 보조금 유치, 외부 기부금 유치, 대내·외 평가보고서 작성, 외부 사업보고서 작성, 연구과제 수탁 등에 참여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봉급조정수당 : 신규 채용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교직원 또는 하위 직급자의 안정적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② 제1항의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5.16.]

제22조(그 밖의 제수당)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의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매년도 본교 보수책정안 및 공무원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3 수당 감액지급구분표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1.12.22.]

[전문개정 2021.12.22.]

제23조(학사지도비 및 학사관리비) ① 교직원이 학생활동의 과외지도, 각종 학생모임의 지도, 교외학생 활동지도, 면학분위기 조성 및 원활한 학사운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사지도비 또는 학사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3 수당 감액지급구분표에 따라 학사지도비 및 학사관리비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1.12.22.]

[전문개정 2021.12.22.]

제24조(직책 및 직급보조비)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월정직책금(보직수당, 직책수당, 학과장수당 등), 직책보조비 및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매년도 공무원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01.8.16., 2015.3.26.)

제25조(연가보상비) ① 교직원복무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잔여연가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②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는 잔여연가일수의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겸임수당) 교직원이 본직 외에 다른직에 겸임되었을 경우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당직근무수당) 당직의 명을 받고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야간근무수당) 야간에 근무하거나 주·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야간근무수당 및 야근식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8.16.)

제29조(자격증 및 특수업무수당) 기술자격증 및 특수업무종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격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수지급

제30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국외연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보수계산) 교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12.22.]

제33조(월중 면직등에 대한 봉급지급) ①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는 면직의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감액되는 봉급을 계산하여 해당 월봉급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교직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4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지급)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면직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관련 법령,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② 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제36조(결근기간의 봉급감액) ①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 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봉급감액은 매년도 2월 28일에 연간 결근일수를 연가일수와 비교 후 다음 달에 감액 지급한다.

제37조(휴직기간의 봉급지급) 휴직기간 중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제47조 및 교직원인사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제38조(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정관 제48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된 교직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12.22.]

제3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교직원의 보수지급) ① 교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 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 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직원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직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22.)

제40조(근속가봉) ① 교직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속가봉 지급금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를 참작하여 총장이 따로 정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총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1조(연가등에 따른 보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규정에 의한 보수를 전액 지급하되,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휴직 및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보수 지급방법을 적용한다.

제42조(해외연수, 연구교원 및 파견 교원의 보수 지급) ①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의한 장기해외연수 교원에게는 학사지도비, 급식비, 교원면허증수당, 연구수당을 제외한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3.9.26., 2005.1.24., 2006.1.4., 2015.5.18.)

② 교수연구년제시행규정 제7조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교원에게는 학사지도비, 교원면허증수당을 제외한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항신설 2006.1.4.) (개정 2015.5.18.)

③ 교원인사규정 제32조(파견)에 의한 파견 교원에게는 급식비, 교원면허증수당을 제외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항신설 2025.4.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대체강사료 등 일부를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다. (항신설 2025.4.29.)

(제목개정 2025.4.29.)

제43조(조교의 보수) 삭제 (2021.12.22.)

제43조(수습기간중의 보수지급) 수습기간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교직원인사규정 운영내규 제15조제4항을 적용하여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보수의 10분의 8을 지급한다.

[제44조에서 이동 (2021.12.22.)]

제44조(계약직원등의 보수) 계약직원 및 초빙교원의 보수는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에서 이동 (2021.12.22.)]

제45조(상위 법령과의 관계)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교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위반되는 타 규정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42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28조의 개정규정은 6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81401-768, 2003.9.26)

이 규정은 200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98, 2004.10.12)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9, 2005.1.24)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가족수당 지급에 따른 적용시점) 제18조 가족수당 지급시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③ (기초의학교수연구비에 따른 적용시점) 제42조 해외파견 및 연구교원의 보수지급시 기초의학교수연구비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87, 2005.5.3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42조 해외파견 및 연구교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기초의학교수연구비는 규정

개정 시행일(2005. 1. 24) 이전 연구년제 해당자(2001년, 2002년, 2004년)로서 학교 사정으로 인해 연구년을 신청하지 못한 해당자에 대해서는 총장이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 (기획예산과-10, 2006.1.4)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점) 본 대학 교수연구년제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2006학년도 전반기 연구년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257, 2006.3.9)

이 규정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92, 2007.2.26)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243, 2008.2.1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11조 정기승급 제2항 정기승급일자 적용시점) 교직원의 정기승급일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92, 2008.5.13)

이 규정은 200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288, 2008.11.19)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85, 2011.6.22)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10, 2015.03.26)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기존에 지급된 월정직책금(보직수당, 직책수당, 학과장수당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 2. 제21조(교원면허증 수당)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04, 2015.05.19)

이 변경 규정은 201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해외파견 및 연구교원의 보수지급)는 201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35, 2016.08.11)

이 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678, 2021.12.22)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94, 2022.05.16)

이 규정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999, 2024.04.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047, 2025.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교원인사규정 제32조(파견)에 의한 파견 교원에 대하여 제42조 제3항은 2025년 4월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6.3.9.)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 비 고: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교직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24.4.22.)

장기근속수당 지급 구분표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비 고
20년 이상	100,000원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년 미만	30,000원	

「별표 3」 (개정 2021.12.22.)

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구 분	정직 기간중	감봉 기간중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 전액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할	수당액의 3할	수당액의 5할

- 적용수당 :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구수당, 근무수당, 가계지원비, 학사지도비, 학사관리비, 급식비 등
- 명절휴가비 : 감봉인 경우에는 전액 지급하고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인 경우에는 전액 감액